##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 20215060

최초 등록일 : 2021.11.10

최종 등록일: 2024.08.12

# 덮밥어때

canhouse1@naver.com

# 정보공개서

㈜캔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 덮밥어때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대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17가길 4,5층(안암동2가)

[대표 전화번호] 비공개 [대표 팩스번호]02-928-9183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비공개** 

[홈페이지] https://태리로제.com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기	자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	게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 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 Ι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덮밥어때 외 5개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17가길 4, 5층(안암동2가)				암동2가)	
㈜캔푸드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		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12.19	2020.01.02	송창헌,이승재,송창범		1833-	9283	02-928-9183
	법인등록번호	110111-7331187 스		사업자등록변	<u></u> 보호	777	7-87-01342

####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이름	대표자	대표번호	
㈜캔	푸드	송창헌, 이승재, 송창범	비공개	
<b>소</b> 창허(대표이사)	영업표지	주 소		
이승재(대표이사)	덮밥어때 외 5개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17가길 4, 5층(안암동2가)		
	송창헌(대표이사)	이승재(대표이사) 덮밥어때	㈜캔푸드     송창헌, 이승재, 송창범       송창헌(대표이사)     영업표지     주 소       이승재(대표이사)     덮밥어때     서울시 성북구 고려다	

####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덮밥어때]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덮밥어때	
상 호	덮밥어때 OO점	
상표(서비스표)		준비중입니다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최3사연의대대표 및 손계서5.기업도차조의산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자세한 내용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15,831	113,002	702,829	1,390,523	808,369	658,632
2022년	1,999,937	280,079	1,719,857	2,408,735	1,227,689	1,017,029
2023년	2,027,847	36,196	1,991,651	1,751,559	447,651	412,370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매출액은 정확한 매출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이름	현 직위	사	·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연 식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송창헌	대표	2019.12.19~현재	㈜캔푸드 대표	업무총괄				
	이승재	이승재	대표	2019.12.19~현재	㈜캔푸드 대표	업무총괄			
관련 임원			이승재	이승재	이승재	이승재	이승재	감사	2017.05.01.~ 2020.03.31
		대표	2020.05.13~현재	㈜캔에프앤디 대표	기업총괄				
코라 이이	스키미	대표	2019.12.19~현재	㈜캔푸드 대표	업무총괄				
관련 임원	송창범	대표	2017.05.01~현재	㈜캔에프앤디 대표	기업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4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식천구(당)	
2023년 12월 31일	3	0	4	

<sup>\*</sup>원천징수신고 인원 총 7명중 상근임원이 3명 포함되어 있어 직원 수는 4명입니다.

####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덮밥어때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캔푸드	가맹사업 경영	2021.01.01 ~현재	태리로제떡볶이&닭강정 (등록번호: 20211074) 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캔푸드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	그릭엔젤 (등록번호: 20213956) 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캔푸드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	리아파스타&순살치킨 (등록번호: 20213953) 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캔푸드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	포케래빗샐러드 (등록번호: 20213955) 라는 영업표지의



				기디이시기에 거어
				기타외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캔푸드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	두두치킨 (등록번호: 20241280) 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캔푸드	가맹사업 경영	2020.01 ~2022.04	무한정차돌 (등록번호: 20200656)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캔푸드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 ~2022.04	빅보스부대찌개 (등록번호: 20213952) 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캔푸드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예정 ~2022.04	태리닭강정&떡볶이 (등록번호: 20211073) 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sup>\*</sup>이번지깡통집,아쿠아플레이의 이번지깡통집은 2020년 5월 14일에 자진취소하였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없습니다.

# Π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덮밥어때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시작 예정입니다.

#### 2. 덮밥어때 가맹사업의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캔푸드	호계치킨	송창헌,이승재,송창범	가맹사업예정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02, 102호(제기동)
㈜캔푸드 (주소변경)	호계치킨	송창헌,이승재,송창범	가맹사업예정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17가길 4, 5층(안암동2가)
㈜캔푸드 (영업표지 변경)	호계치킨&피자	송창헌,이승재,송창범	가맹사업예정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17가길 4, 5층(안암동2가)
㈜캔푸드 (영업표지 변경)	덮밥어때	송창헌,이승재,송창범	가맹사업예정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17가길 4, 5층(안암동2가)

#### 3. 덮밥어때 업종

<sup>\*</sup>무한정차돌,빅보스부대찌개,태리닭강정&떡볶이 가맹사업은 2022년 4월에 자진취소하였습니다.

<sup>\*</sup>당사는 2023년 03월 01일자로 삼일카레를 포케래빗샐러드로, 로담을 그릭엔젤로, 호계치킨을 호계치킨&피자로 영업표지를 변경하였습니다.

<sup>\*</sup>당사는 2024년 9월에 호계치킨&피자를 덮밥어때 영업표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더 바시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덮밥어때	한식	덮밥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2) (d	6	2021.12.3	1	6	2022.12.3	1		2023.12.3	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미개시로 해당없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022			사업미개시	로 해당없음		
2023						

####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덮밥어때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7.H	사호/리르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	점/직영점의	] 수
구분	상호/이름	경험료기	등록번호	현중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캔푸드	태리로제떡볶이 &닭강정	20211074	분식	222/0	181/0	108/0
가맹본부	(주)캔푸드	그릭엔젤	20213956	기타외식	가맹사약	법미개시	0/1
가맹본부	(주)캔푸드	리아파스타 &순살치킨	20213953	기타외식	7	<b>-</b>	시
가맹본부	(주)캔푸드	포케래빗샐러드	20213955	기타외식	가맹사업미개시		시
가맹본부	(주)캔푸드	두두치킨	20241280	치킨	フ	<b>ㅏ맹사업미개</b> /	시
가맹본부	(주)캔푸드	무한정차돌	20200656	한식	0/0	0/0	0/0
가맹본부	(주)캔푸드	빅보스부대찌개	20213952	한식	フ	·맹사업미개/	시
가맹본부	(주)캔푸드	태리닭강정 &떡볶이	20211073	분식	7	<b>-</b>	시

\* 이 번 지 장 집, 쿠 플 이 이 리 의 이 지 통 집





은 2020년 5월 14일에 자진취소하였습니다.

\*무한정차돌,빅보스부대찌개,태리닭강정&떡볶이 가맹사업은 2022년 4월에 자진취소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덮밥어때 가맹사업은 시작예정이므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단위: VAT 제외, 천원)

		ブ	·맹점사업	자의 연	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비고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λlα	업미개시로	! 체다이	10			
경기		^1	뭐 이 / 이 / 이 프	- 이 6 표	λ <del>ロ</del>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덮밥어때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사업 미개시로	해당사항 없음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이 금액에는 태리로제떡볶이&닭강정, 그릭엔젤, 리아파스타&순살치킨, 포케래빗샐러드 가맹사업으로 사용한 광고판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사용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광고 (판촉포함)	비공개	79,850

<sup>\*</sup>상기 광고판촉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을 기재한 것입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





####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관리지점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안암동지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119 한국화학회관	02-928-0853

<sup>※</sup> 온라인(www.ibk.co.kr)을 통하여 예치할 경우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운영중에 있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lap{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1.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사실이 없습니다.

####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 점포임대관련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비고
----------	---------	----------	----



가맹비	3,300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기간 내에 가 맹점사업자의 귀 책사유 없는 사유 로 계약이 해지	점사업자의 귀책사	영업표지 사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교육비	3,300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 환되지 않음	
총계	6,600				

※ 상기의 가맹비는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30%)와 영업표지 사용의 허락에 대한 대가(30%), 매뉴얼 등 자료제공의 대가(10%), 기타 개업지원 대가(30%)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1,0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등	
총계	1,000			

\*상기 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3,300
교육비	3,300
보증금	1,000
합계	7,6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33㎡(1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7,950	3,795			
인테리어 (점포공사)	가맹본부 협력업체(미정)	22,000	2,200	계약금: 계약 체약과 동시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3.3㎡ 늘어날 때마다 2,200천원 추가부담
설비	별첨2 참조	4,400	440	중도금: 공사 시작후 (1)일까지	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 및 사인물	가맹본부, 협력업체(미정)	6,600	660	잔금: 개설	발주 전 계약취소	매장 상황에 따라 변경



				(3)일 전까지		
소모품비	별첨2 참조	1,100	110		발주 전 계약취소	
개점홍보비	별첨2 참조	1,100	110		발주 전 계약취소	
(원부재료) 초도물품	별첨2 참조	1,100	110		발주 전 계약취소	매장 상황에 따라 변경
의탁자	별첨2 참조	1,650	165			

- \*샵인샵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존 인테리어와 설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초도물품과 소모품을 구입하고 개점홍 보를 진행한 후 덮밥어때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시세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식기세척기, 철거, 전기증설, 냉난방기, 가스, 정화조, 화장실, 외부상하수도, 외장추가, 소방공사 등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 의 관리감독 대가**로 3.3㎡ 기준으로 [ 220 ]천원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가맹점사업자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덮밥어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비고
1		1				



					없는 사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220	다음 월 10일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 업자측이 배분 하여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년 220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력업체 (미정)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미정)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미정)	월20	다음 월 5일			

<sup>※</sup>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가맹사업미개시로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가맹사업미개시로 해당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 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 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호 · 간판	
등 영업표지와 특허, 의장 등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	
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제39조
지체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지체 및 위반기간에 대하여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	
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	
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제41조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제42조
있다.	
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7]] 4 O Z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⑤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	N007
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	제28조



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 등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가맹사업 미개시로 해당 사항 없음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이익

귀하가 덮밥어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가맹사업 미개시로 해당 사항 없음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덮밥어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가맹사업미개시로 해당없음
- 2) 당사가 덮밥어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가맹사업미개시로 해당없음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 야 합니다.





Ī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당사가 제공한 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당사가 지정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1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당사가 제공한	기재된 제품은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소비자 외 제3자	상품리스트 참조	판매할 수 없음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당사가 제공한 상	품리스트 참조	서면 공지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귀하가 당사의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동일업종을 출점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치 어조 바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덮밥 전문점	덮밥어때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   (전处전이 회다보도 및 이도) 1km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단, 특수상권은 제외]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 지역 설정 기준에 따름

특수상권이란, 역세권(각 출구), 아파트(1,000세대)단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쇼핑몰, 종합병원, 대학가, 놀



이공원,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내 상가,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으로 구분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별도의 상권으로 정하고, 해당 별도의 상권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로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인근 가맹점과 충분한 합의를 거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 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 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 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 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부 회신
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 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 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덮밥어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해당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지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_	_	_	_

<sup>\*</sup>가맹사업 미개시로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_	_

<sup>-</sup> 사업미개시로 해당없음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재계약(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① 13 등 이대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D 180 * D 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 00일 기원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_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과검	계약조문	제 37 조
71 71	게ㅋ그긴	게이(크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관련 계약조문 제38조

- 1. 가맹점사업자가 원 · 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
- 로 통지하는 경우
-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 위치변경을 한 경우
- 7. 제9조에서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없이 영업표지를 임의로 사용 한 경우
- 8. 제22조 제10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 로 사용한 경우
- 9.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변경한 경우
- 10. 제31조를 위반하여 브랜드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1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자료 통지 및 제공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 12. 제40조의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 및 겸업금지의무 또는 영업시간을 위반한 경우
-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5.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개량·보수 요 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6.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 · 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7. 구입강제품목을 지정된 업체로부터 구입하지 않거나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필수품 목이나 지정사양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한 경우
- 18.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19.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20.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21. 가맹점사업자가 고객들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2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2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계약조문 제38조 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 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해당 없음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 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 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 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병심사업사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 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_		

<sup>※</sup>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및 겸업금지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과 계약종료후 3년간은 귀하가 [덮밥어때]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가맹계약서 제8조의 주소상 시설 내에서 [덮밥어때]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덮밥을 주 메뉴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문의:
판매하는 업종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가맹관리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3:00 (12시간)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영업일 준수	문의: 가맹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0평기준, 1명 이상	지정 그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10평기준, 1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1 4	82.8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한 다 '글시	H135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라그 게히 고그 .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행사)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전체 판촉행사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단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는 50%이상, 판촉은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당사는 전체 가맹점주에게 광고비(판촉비) 분담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촉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는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관련 계약조문 제25조 (판촉)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와 판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 자는 광고나 판촉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계약조문 제40조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 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제8조의 주소상 시설 내에서 [덮밥어때]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계약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다.	제42조 제1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	제42조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	
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	
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	
다. 단, 각 조항에 위약금이 있을 경우 그 조항이 본조의 위약금 규정보다 우선하여	제38조
적용되며,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개설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매출	제5항
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가맹점사업자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X 카드매출액 1% X 10개월(단,	
10개월 미만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40조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경	
업,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	제42조 제3항
(₩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	제42조 제4항
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VI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 내용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1. 영업개시이전부담 금전지급방법 참조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4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_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당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_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계약조문 제43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 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 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
	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항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
	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
제외사유	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
	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 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3일(최대2명)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년 2회	년22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수시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 하며, 교통비, 숙식 비는 개별 부담임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계약의 해지)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	제11조(개시 승인)
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세114(계시 중단)

#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해당없음		

<sup>\*</sup>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끝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운영팀(010-9490-845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실(044-200-4239~4)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재무현황

#### 2021년 표준대차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1년 표준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2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2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3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3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첨2] 물품 현황 및 임차현황

####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 상기 설비리스트는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모품/개점홍보물/의탁자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 상기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원부재료 필수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품목, 강제/권장 여부, 거래상대방 등은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전자매체(전자문서)를 통하여 고지하고 귀하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 F & च S	세시인간	3^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예치가	갱금	₩		(급		원 정)
신청인의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맹사업거래의 공정 제2항에 따라 위외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 <i>ラ</i>	시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 [덮밥어때] 가맹본부 ㈜캔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 (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합니다.





*	수령자(가맹희망자)	본인의	인적	정보	등
---	------------	-----	----	----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점포예정지		
제공일시	제공장소	

나. 본인은 [덮밥어때] 정보공개서(최종등록일:2024년08월12일)를 년 월 일에 제공 받았습니다.

수령자의 성명: (서명/날인)

다. 본인은 [덮밥어때] 가맹계약서를 년 월 일에 제공받았습니다.

수령자의 성명: (서명/날인)

라. 본인은 [덮밥어때]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년 월 일에 제공받았습니다.

수령자의 성명: (서명/날인)

송 창 헌

(인) 또는 서명

**가맹본부:** 이 승 재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u>송 창 범</u> 수 령 인 :

(인) 또는 서명

(절취선)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 가. [덮밥어때] 가맹본부 ㈜캔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 (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합니다.
  - \* 수령자(가맹희망자) 본인의 인적 정보 등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점포예정지		
제공일시	제공장소	

나. 본인은 [덮밥어때] 정보공개서(최종등록일:2024년08월12일)를 년 월 일에 제공 받았습니다.

수령자의 성명: (서명/날인)

다. 본인은 [덮밥어때] 가맹계약서를 년 월 일에 제공받았습니다.

수령자의 성명: (서명/날인)

라. 본인은 [덮밥어때]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년 월 일에 제공받았습니다.

수령자의 성명: (서명/날인)

송 창 헌 (인) 또는 서명

**가맹본부:** 이 승 재 (인) 또는 서명

송 창 범 (인) 또는 서명

수 **령 인 :** (인) 또는 서명